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68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14 | 고 성 군 수 |
| 나. 회 부 일 자 : 2001. 3. 16 | |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3. 26 |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의 근거 마련(안 제2조)
- 나.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규정(안 제4조)
- 라.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및 제7조)
- 마. 기금의 운용계획서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시·도에 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01년 2월 27일 현재 우리군에 2,856천원의 식품진흥기금이 경남도로부터 배정되었으나 관련 기금조례가 없어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불가피하나
-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예상목표액, 연간 조성예정금액,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2000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과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이며, 식품진흥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영업장에 대한 과도한 단속과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답 : 2000년도 과징금액은 15,560천원이며, 과도한 단속이나 군민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1. 3.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